

실용주의 대북정책 구상

대북지원과 인권의제를 중심으로

김병로(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국문요약

본 논문은 이명박 정부의 등장 이후 제시된 대북 인권·지원 정책이 북한의 거친 반발에 부딪혀 정책실행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인권개선과 인도주의 지원을 실제적으로 도모할 수 있는 전략과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논문은 먼저 대북 인권·지원 정책의 원칙으로 진정성을 담고 있는 인도주의 정신과 실용주의 방법, 그리고 수단·자원으로서의 소프트파워의 활용을 강조한다. 접근방법으로서는 인적접촉과 인도주의, 정치적 인권을 분리·병행하는 인권전략을, 그리고 북한의 사회개발 차원에서 종합플랜과 실행계획을 포함한 대북지원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전략에 기초하여 각각의 이슈에 대해 사안별 쟁점과 문제점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상황과 현실에 맞는 합리적 대안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실용주의 대북정책 구상의 실현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여섯 가지 정책과제를 제안한다.

주제어: 대북정책, 대북지원, 북한인권, 소프트파워, 실용주의, 인도주의, 포용정책

I. 시작하며

이명박 정부는 북한의 인도주의 및 인권문제를 대북정책의 중요한 의제로 설정하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접근법을 탐색하고 있다. 통일부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등 여러 국가기관에서 북한인권법 제정을 비롯한 다각적인 대안을 모색하면서 대북정책에서 인권과 인도주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고심하고 있다.

현 정부는 이미 ‘비핵·개방·3천’에서 남북간 경제협력과 지원의 조건으로 북한의 ‘비핵’과 ‘개방’을 강조했다. 남북경협에 대해서는 비핵화의 진전, 사업타당성, 재원확보 가능성, 국민적 지지 등의 조건이 갖춰졌을 때 추진한다는 ‘경협4원칙’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이 원칙에 따라 10.4남북정상선언 등 기준에 합의한 사업에 대해 당장 추진할 사업, 중장기 사업, 추진 불가능 사업 등으로 구분하여 집행할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2008년 3월 10일)하였다.

이처럼 전반적인 대북정책의 기초가 변화한 가운데 인권문제와 인도주의 지원에 대해서도 현 정부는 지난 정부와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인 2008년 2월 2일 언론 인터뷰에서 “차기 정부는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전략이 아닌 인류 보편적 가치 차원에서 거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고, 정부출범 이후에도 통일부의 청와대 업무보고(2008년 3월 26일) 등에서 강조되었다. 인도주의 목적의 대북지원에 대해서는 핵문제와 연계시키지는 않겠지만 “참여정부식으로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북한이 먼저 지원을 요청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고 있다.

지금까지 나온 새 정부의 입장을 정리하면 북핵문제 해결과 북한개방에 우선순위를 두고, 남북관계보다는 한미관계와 6자회담을 중시하며, 대북지원은 ‘경협4원칙’을 적용하되 인도주의 지원은 북한이 먼저 요청하면 제공하고, 인권문제는 인류보편적 가치 차원에서 제기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현 정부의 입장은 대북정책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구체적 사안에 대해 이렇다 할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우호적 무위’(Benign Neglect) 정책 혹은 ‘전략적 모호성’ 유지 전략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처럼 변화된 신정부의 전반적인 정책기조와 원칙이 정부당국자를 통해 표현되는 과정에서 북한의 거친 반발에 부딪혔다.¹⁾ 게다가 핵문제가 북미 간에 극적 타결국면으로 전환되고 미국이 50만 톤의 대북식량지원을 약속함에 따라 새 정부의 입장은 난처해졌다. 여기에 세계식량기구(WFP)와 대북지원 NGO가 북한주민들의 아사 가능성을 보도하면서 대북식량지원에 미온적인 한국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²⁾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명박 정부는 고민에 빠졌다. 북한의 요청이 있을 때까지 계속 기다려야 하는가, 아니면 인도주의 입장에서 무조건 식량을 보내야 하는가.³⁾ 북한과의 대립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한이 먼저 제의를 할 경우 북한의 반응이 없으면 남한정부의 입장만 더 난처하게 될 것이다. 남북 당국간의 갈등이 깊어지면 인권문제를 해결하는 일도 쉽지 않을 것이다. 북한의 인도주의·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을 대화테이블로 끌어내고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과 추진력이 필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는 대북지원과 북한인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제적이며 실용적인 접근방법과 대안

1) 3월말 개성·금강산의 남한당국자 퇴거조치(2008년 3월 27일)에 이어 관영매체의 당국간 대화중단 선언, 군당국의 NLL 무력충돌가능성 언급으로 북한은 사태를 긴장시켰다, 또 4월 1일부터는 노동신문을 비롯한 전 언론매체와 기관을 동원하여 ‘역도(逆徒)’ ‘젯더미’ 등의 험악한 발언으로 이명박 대통령 개인을 비방함과 동시에 ‘비핵·개방·3000’을 조목조목 비판하고 나섰다.

2) 2008년 4월 30일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는 이명박 정부가 인권 개선과 분배 투명성 등 전제조건을 달아 대북 식량 지원을 중단한 데 대해 비판하고 나섰으며, ‘좋은벗들’도 미국에서 설명회를 갖고 대북 식량지원을 호소했다.

3)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현 정부의 입장이 인게이지먼트(engagement), 즉 적극적 대화정책이라고 설명하면서 식량지원을 위해 미국·국제기구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앙일보』, 2008년 5월 12일.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는 며칠 뒤 국제기구를 통한 원조나 미국의 대북식량지원에 참여하는 방식은 검토되지 않고 있다고 언급하는 등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다. 『연합뉴스』, 2008년 5월 15일.

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Ⅱ. 지난 정부 대북지원 · 인권 정책의 성과와 문제점

한반도에서 냉전적 남북관계의 변화는 1988년 서울올림픽이 계기가 되었다. 공산권과 외교관계가 없던 한국이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공산국가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7.7선언'을 단행했다. '7.7선언' 이후 북방정책의 일환으로 한소수교(1990년)와 한중수교(1992년)가 이루어졌고, 「남북교류협력법」이 제정됨으로써 「국가보안법」을 넘어선 남북교류협력시대를 열었다. 1995년 여름 수해를 입은 북한을 돕기 위해 대북지원이 시작되었고, 금강산관광과 남북정상회담, 개성공단개발이 진행되면서 남북간의 인적, 물적 교류가 급증했다. 분단이후 총 1만 명에도 못 미치던 남북간 인적 왕래가 지난 10년 동안 43만 명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16억 달러 규모의 대북지원도 제공되었다.⁴⁾

남북간 교류협력이 증대됨에 따라 대내외적 긴장과 갈등이 야기되었다. 사회 내부적으로는 북한인권 · 민주화와 남북화해 · 평화 담론이 부딪히며 파열음을 내었고, 대외적으로는 북한의 붕괴 혹은 전쟁 또는 통일의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주변4국의 개입이 적극화되었다. 남북한과 주변4국의 6자회담이 시작되었고, 2.13합의 타결 이후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4) 1995년부터 2005년까지 한국은 16억 4,743만 달러, 국제사회는 23억 6,133만 달러를 각각 지원하여 총 40억 달러 규모의 대북지원이 이루어졌다. 정부차원에서 1995년에 쌀 15만 톤 지원을 시작으로 2000~2007년에 매년 20만~40만 톤의 식량을 지원했고, 비료는 1999년 15만 5천 톤 지원에 이어 2000~2007년에 매년 20~30만 톤을 지원했다.

특히 지난 정부 10년은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의 변화를 목표로 적극적인 대북지원 정책을 구사하는 시기였다. 대북포용정책의 기치를 내건 김대중 정부는 “접촉을 통한 변화”라는 서독의 동방정책을 벤치마킹하여 경제사회적 접촉·교류를 통해 의식과 가치관을 변화시키고 정치적 변화까지 유인해 내겠다는 의지를 앞세웠다. 이러한 대북지원 정책은 노무현 정부에서도 평화변영정책으로 지속되어 인적 왕래와 경제지원이 적극 이루어졌다. 이러한 협력·지원 정책은 전반적으로 남북관계의 안정과 북한주민들의 의식변화에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보이지만, 정치군사적 협력이나 북한지도부의 대남정책 변화를 유인해 내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⁵⁾

이런 상황에서 첫째로 대북지원정책에 대한 여러 문제가 제기되었다. 즉 지원의 기준과 방식, 분배의 투명성, 지원효과 등이 문제로 부각된 것이다.⁶⁾ 1995년 북한의 대홍수가 발생하고 ‘고난의 행군’으로 인한 대량아사 사태가 발생했던 시기에는 유례없는 유엔의 호소, 대북지원 NGO의 동포애적 활동으로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문제시 되지 않았다. 그러나 금강산관광과 남북협력사업의 추진에 따른 경제지원이 제공되면서 대북지원의 기준과 방식이 문제시되었다. 통일부는 ‘인도주의’ 목적의 지원만을 대북지원에 한정시켰으나 야권에서는 상업거래의 지원도 포함해야 한다면 ‘퍼주기’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이 때문에 지난 10년간 대북지원액을 통일부는 2조 3천억 원이라고 하고 야권은 8조 원이라는 상반된 주장을 내기도 했다. 어디까지가 지원인지, 어떤 기준과 방식으로 대북지원을 실시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일었다. 또한 현재의 ‘모니터링’ 제

5) 김병로, “92년 이후 인도적 대북지원의 성과와 개선과제”, 『남북정상회담 이후의 인도적 대북지원』, 남북나눔운동 정책세미나, 2007년 12월 5일.

6) 대북정책을 둘러싼 남한사회의 이념갈등에 관한 선행연구와 이론적 논의에 대해서는 김병로, “남남갈등 해소를 위한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 『통일정책연구』, 12권 2호 (2003), pp. 111~139 참조.

도로는 분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쉽지 않아 지원물품이 수혜자에게 제대로 들어가는지, 군용으로 빠져나가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분배투명성도 쟁점이 되었다.

둘째로, 북한인권문제를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었다. 지난 정부는 남북간 화해와 협력, 평화유지를 위해 인도주의 대북지원을 적극 실시한 반면, 북한의 자유증진과 인권상황 개선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등한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인권에 대한 관심은 인도주의 지원과정에서 높아졌다. 대북지원 과정에서 북한의 인권참상이 공개되었고 이는 지원에 대한 동정심과 함께 북한정권에 대한 비판을 초래했다. 또한 식량난으로 발생한 탈북자들을 통해서도 북한인권실태가 폭로되었다. 이처럼 북한인권 문제가 남북관계의 현실문제로 부각된 상황에서 지난정부는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다. 특히 2003년부터 유엔 인권위원회와 총회에 상정된 북한 인권개선 결의안에 한국정부가 불참 내지 기권을 선택함으로써 비난의 표적이 되었다.

셋째로, 대북활동 NGO간의 이해갈등을 심화시켰다. 1995년 이후 북한의 수해복구와 식량난 해소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 실시되면서 대북지원 NGO가 급성장하였고,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시작된 6.15와 8.15 민족행사를 추진하면서 통일운동 NGO의 활동이 부상하였다.⁷⁾ 반면, 식량난과 함께 발생한 해외탈북자를 지원하기 위해 생겨난 NGO나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활동을 개시한 북한인권과 납북자, 탈북자 관련 NGO는 정부의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하였다. 해외탈북자 구호활동이나 북한인권

7) 통일부에 등록된 70여 개의 대북지원 NGO는 지난 10년 정부의 대북지원 정책과 함께 급성장했으며, 민화협(1998년 9월 결성)과 통일연대(2001년 3월), 7대 종단의 3대 기관 연합행사로 진행되는 민족행사는 지난 정부 시기 동안 통일운동을 주도하였다. 대북지원 NGO는 '북민협'(대북지원민간단체협의회)과 정부-민간 협력체인 '민관정책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을 만큼 활발하며, 남북의 민화협은 남북협력의 강력한 네트워크를 형성했다.

개선 활동은 정부의 화해·협력 정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대북지원사업과 통일운동, 북한인권활동 간 소통을 중재하지 못했고 공감대 형성에 실패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들 단체·세력 간 대립과 갈등을 야기하고 말았다.

지난 정부의 이 같은 대북지원 및 인권정책을 바라보는 이명박 정부의 시각은 극도로 비판적이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보다 근본적이고 원론적인 문제를 제기한다. 지난 10년의 남북관계를 한마디로 ‘폐주기’로 규정하면서 이러한 ‘폐주기’ 관행과 끌려다니는 대북태도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때문에 이대통령과 ‘비핵·개방·3천’에 대한 북한당국의 노골적인 비난에 대해서도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0년간의 기존 틀이 새로이 정립되는 조정 기간”으로 규정하며 의연하게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⁸⁾ 남북관계를 정상적 궤도에 올려놓으려면 일시적인 갈등국면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남북관계에서 북한의 대남인식과 태도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당위론에 동의하더라도, 이명박 정부가 현재 대응하는 방식으로 과연 북한의 대남인식과 태도를 바꿀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물론 어떤 다급한 상황, 예컨대 중국의 원유공급 중단이라든가 미국의 군사적 공격과 같은 위기 시에는 전술적 행동변화를 보일 수는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것은 일시적일 뿐이며, 북한 지도부의 태도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재와 같은 당국간 대립은 자존심을 세우는 약간의 카타르시스 효과는 있을지 모르나 결과적으로 한반도는 군사적 긴장과 경제적 불안 상황으로 내몰린다. 이런 점에서 이명박 정부는 실용주의에 입각하여 북한주민들의 인권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실제적인 전략과 방법, 그리고 이를 위한 인도주의 지원정책을 실행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8) 『연합뉴스』, 2008년 4월 13일.

Ⅲ. 대북지원 및 인권정책의 기본원칙

1. 정신: 인도주의

인권은 가장 보편적인 가치이면서도 고도의 정치성을 띠고 있는 사안이다. 때문에 인권문제나 지원정책에 있어서 정치적 색채를 배제하고 인도주의 정신을 견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인도주의(humanitarianism)는 인간의 존엄을 지상(至上)으로 여기고 인간애를 바탕으로 인종·민족 등의 차별 없이 인류의 복지를 증진시키려는 이념이다. 인도주의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자유, 평화, 복지의 이상을 담고 있다. 즉 자유·평화·복지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북한주민의 억압적 상황을 개선하고 자유를 보장하며, 남북관계를 화해와 공존, 평화의 관계로 만들어 나가되, 생존권과 복지향상을 위한 개발과 지원, 협력을 적극 추구한다. 이런 점에서 대북 인권·지원 정책은 북한주민의 자유증진과 복지향상, 남북관계의 평화적 유지·관리라는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는 가운데 추진되어야 한다.⁹⁾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한 인권·지원 정책은 평화적 수단에 의한 인권, 평화적 방법을 통한 인권 실현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북 인권정책의 목표를 장기적으로 북한주민들 스스로 자기들의 자유·복지를 증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두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북한에 자율적 시민사회의 공간이 형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할 것이다. 인권개선 목표 달성을 위해 자유·평화·복지의 가치를 소홀히 할 경우 인권개선 활동은 인도주의 활동이 아닌 정치적 운동으로 변질될 수 있다.

⁹⁾ 서보혁, 『북한인권: 이론·실제·정책』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7), p. 398.

북한인권정책은 정치적 목적으로 추진해서는 안 되며 순수한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전개해야 한다. 북한인권 문제를 정치 쟁점화하지 않고 인류보편적 가치의 관점에서 다루어야만 인권문제의 '진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¹⁰⁾

2. 방법: 실용주의

인권개선과 대북지원을 위해 어떤 원칙과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가. 북한과 협상하려면 공개적 압박을 통해 단호함을 보여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북한정권이 존재하는 한 대화와 타협을 통한 방법을 구사하는 것이 실익이 있다는 반론도 있다. 인권개선의 실제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실행과정에서 다각적인 수단·자원을 동원해야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원칙은 분명하고 철저히 하되 접근방식은 유연하게 추진한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창조적 실용주의’는 유력한 원칙 내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실용주의로 접근한다는 말은 남북관계의 현실에 맞게, 그리고 북한과 남한의 실정에 맞게 추진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지식은 실제생활에 유용하다고 검증될 때에만 옳다는 미국식 프라그마티즘(pragmatism)이든, 중국식의 흑묘백묘론(黑猫白猫論)이든 실용주의는 목표를 성과 있게 달성하는데 최우선 순위를 둔다.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공개적인 정치·경제적 압박을 동원할 수도 있고 외교적 대화·설득을 활용할 수도 있어야 한다. 실용주의를 창조적으로 적용하려면 북한인의 사고와 가치를 활용하고 상대방의 체면을 세워주는 방식으로 풀어야 한다. 북한당국에게는

10) 윤여상,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진정성과 헌신성을 기대하며”, 『평화논평』 (온라인), 2008년 5월 1일; <http://www.peacefoundation.or.kr/board/view.php?&bbs_id=tpf01&page=&doc_num=91>.

당국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북한주민에게는 북한주민들의 인권수준에 맞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¹¹⁾ 북한은 인권개선 요구에 대해 주권원칙에 입각하여 대응하고 있는데 남북기본합의서의 내부문제 불간섭 조항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타협하기 쉽지 않다. 이런 점에서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실행과정에서 명분이나 문화, 국내정치 상황도 고려하는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

3. 수단 · 자원: 소프트파워

이명박 정부는 인권 · 지원 정책을 위해 어떤 수단과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가. 이명박 정부는 인도주의 지원에 대해 북한이 먼저 지원을 요청해야 한다고 말한다. 북한에 끌려가듯 하는 태도를 고치기 위해 남한이 먼저 대북지원을 제의하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나, 대북지원을 선제의 하는 행위가 결코 북한에 끌려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도덕적 관계의 기선을 제압하는 행위가 된다. 북한이 1984년 9월 남한에 식량지원을 선제의 한 사례를 통해서 볼 때도 먼저 제의하는 것이 상당한 도덕적 힘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남한이 알아서 가져다 바친다”는 북한당국의 대주민 정치선전에 현혹될 필요가 없다.¹²⁾ 북한주민들의 필요를 고려하여 선도적으로 제안함으로써 모델과 위를 갖게 되고 공세적 협상의 추진동력도 얻게 된다. 인도주의 분야의 선도적 지원을 바탕으로 도덕적 호혜주의에 기초한 북한 인권문제 제기 및 대화 · 협상의 동력을 만들어야 한다.

11) 인권문제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에 대해서는 김수암,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서울: 통일연구원, 2007) 참조.

12) 만약 북한의 요청에 의해 주었을 경우에도 북한은 “우리가 가져오라고 말만 하면 다 가져 온다”라고 대주민 정치선전을 할 것이다. 그러한 이념논쟁은 끝없이 계속될 수 있다.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교수 겸 국제정치학과 교수인 조셉 나이(Joseph Nye)는 인권문제는 강요가 아니라 문화, 가치, 외교술과 같은 소프트파워로만 해결할 수 있다면서 소프트파워만이 매력으로 상대를 끌어들이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음을 강조한다.¹³⁾ 북한 내 지지세력을 확보하는 것도 소프트파워의 자원이며 주변국과의 연대(solidarity)를 형성하는 것도 중요한 소프트파워다. 한국은 인권협상의 수단·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소프트파워를 키워야 한다. 물론 한국이 갖고 있는 경제적 자원은 하드파워로서 중요하다.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소프트파워다. 상대가 요청해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선제적 제의를 함으로써 소프트파워를 갖추어야 한다. 인적, 물적 교류가 증대하고 지원이 확대되어 관계가 강화되면 스마트파워는 그만큼 증대하고 인권개선의 효과적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IV. 인권·지원문제 접근방법

1. 인권문제: 분리·병행 전략

북한의 인권문제를 인적접촉(human contact), 인도주의(humanitarianism), 정치적 인권(political human rights)의 세 범주로 구분하고, 각 범주의 사

13) 2008년 2월 12일 대한상공회의소 강연 ; Joseph S. Nye (ed), "Ignoring Soft Power Carries a High Cost" (Harvard Kennedy School of Government, 16 May 2004), "Think Again: Soft Power" *Foreign Policy*, (1 March 2006) (온라인), 2008년 5월 1일; <<http://yaleglobal.yale.edu/display.article?id=7059>> ; Suzanne Nossel, "Smart Power", *Foreign Affairs*, Volume 83 No. 2 (March/April, 2004), pp. 131~142.

안들을 순차적 혹은 연계적 방법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른바 ‘선택과 집중’이라는 원리를 활용하여, 현실적으로 해결 가능한 문제들에 우리의 노력과 자원을 집중하는 방식으로 북한의 인권문제를 해결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이다. 전략의 핵심은 인권의 가장 기본적이며 공통분모에 해당하는 이동의 자유와 가족권 실현의 관점에서 북한인권 개선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개별 영역별로는 협력대상과 방식을 차별화해야 한다.

인적접촉의 영역은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등 가족상봉을 필요로 하는 문제이다. 인적 접촉 영역은 북한의 인권문제이자 남한의 인권문제로 남북관계에서 직접적으로 다룰 수 있는 사안이다. 이 문제는 지난 정부에서도 자국민 보호라는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사안이기도 하다. 인도주의 영역은 식량문제, 개발, 복지 등 생존권과 관련된 문제다. 북한은 자유보다는 생존권과 물질적 보장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며, 개인의 자유나 권리를 주장하기에 앞서 의무·책임 이행을 강조한다. 때문에 북한주민들의 굶주림과 질병치료 등 생존권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접근 가능하다. 마지막 인권영역은 전통적 인권영역으로 불리는 시민적·정치적 권리 등 자유권으로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 권리다. 자유로운 정당결성 및 민주적 선거절차, 언론·집회·출판·결사·시위 등의 보장과 공정한 법적 재판절차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분리·병행전략은 이데올로기 대결이 첨예한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인도주의 문제에 집중하고, 인적 접촉의 폭을 넓힌 후에, 점차적으로 정치적 인권문제를 다루어 나가는 방식을 말한다. 남북관계가 이념적·정치적으로 대립하는 상황에서는 인적 접촉의 문제를 정치적 인권문제와 분리하여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러한 분리·병행 전략은 과거 헬싱키 협정(Helsinki Accord)의 이행과정에서 그 효용성이 증명되었다.¹⁴⁾ 사회주의권이 인권문제 전반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산가족의 상봉·재결합, 해외이주,

국제결혼 허용 등 인적 교류분야와 전반적인 인권분야를 구분하여 인적 교류를 우선적으로 확대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점진적으로 정치적 인권에 대한 양보를 받아내었다. 제2차 마드리드회의에서 인권과 인적 접촉을 분리하여 각각 독립적인 전문가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인적 접촉 분야만이라도 폭넓은 의견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러한 협상과 토론을 바탕으로 제3차 빈회의에서 인권의 상호협약 및 감시기구 설치를 포함한 광범위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다.

실제로 김정일 위원장은 체제 내부의 정치적 문제는 내정간섭으로 거부하면서도 남북간이나 국가간에 얽힌 외교적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를 인정하는 태도를 취했다.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에서 ‘탈북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탈북자의 존재를 인정했으며, 일본에게는 2002년 9월 평양의 북일회담에서 ‘납치자문제’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였다. 이런 점에서 한국은 헬싱키협정의 인권협상 모델을 참고하여 남북관계에서 인도주의 문제로 분류될 수 있는 이산가족, 납북자, 탈북자, 국군포로 등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해 나가야 한다. 지난 10년 동안 인도주의 지원을 통한 관계망이 안정적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이제 남한정부는 이러한 관계망을 바탕으로 인적 접촉 분야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화해야 한다.

이러한 인도주의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식량·비료지원 및 소프트웨어를 적절히 활용해 나가야 한다. 현재 이산가족 상봉을 성사시키기 위해 식량과 비료를 지원하고 있는데, 북한이 가장 필요로 하는 대북 식량지원을 매개로 하여 인권개선을 요구해야 한다. 이러한 대북지원은 앞서 언급한 대로 엄격한 상호주의가 아니라 먼저 주고 나중에 받는 느슨한 도덕적 호혜주의를 적용해야 한다. 나아가 동서독이 정치범을 돈을

14) 김병로, 『북한인권문제와 국제협력』 (서울: 통일연구원, 1997), pp. 49-51, 75-81.

주고 교환(1인당 1억 원 정도)하였던 것과 같이 북한에 있는 월남자가족, 월북자, 납북자, 탈북자가족, 국군포로의 해외여행과 상봉, 귀환 등 다양한 형태의 사업에 지원을 제공하는 적극적인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유엔이나 유럽, 미국, 6자회담 등 남북문제를 다루고 있는 국제기구·국가들의 측면지원이 필요하다. 동서독의 경우에도 유엔과 CSCE가 측면에서 지원하고 여론을 조성하는 동안 서독은 동독에 인권개선을 위한 비밀협상을 제의하고 동독정부와 비밀거래를 추진했다. 국제기구와 단체가 집단적 차원에서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여론을 조성하는 한편, 남북한 당국 차원에서는 개별사안에 대해 유연성을 발휘함으로써 남북한의 국내정치적, 외교적 부담을 줄이는 전략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2. 대북지원: 사회개발을 위한 지원·원조

대북지원에 대해서는 인도주의 목적의 지원은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조건 없이 제공하되, 북한사회개발과 통일준비라는 차원에서 종합적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인도주의 대북지원은 북한 내 긴급구호 상황 발생 여부를 판단하여 제공하면 된다. 긴급구호 상황 발생 여부는 WFP, UNHCR 등 국제기구의 기준을 적용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현 정부가 설정하고 있는 ‘경협4원칙’만을 가지고 대북지원을 실시하는 것은 너무 소극적이다. 현재 선진국들은 사회개발이라는 포괄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개발도상국에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라는 이름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¹⁵⁾ 개발지원 프로젝트가 장기적으로 북한주민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궁극적으로 인권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

¹⁵⁾ 유엔은 선진국들에게 국내총생산의 0.7%를 공적개발원조에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한국은 현재 0.09% 정도에 불과하다.

에서 세계 각국이 개발도상국에 인도적 차원에서 제공하는 공적개발원조(ODA)의 개념을 차용하여 개발지원의 개념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맥락에서 단순한 인도주의 지원을 넘어 통일대비 북한 사회개발 차원에서 개발지원·원조에 대한 종합플랜과 실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대북지원 NGO는 이미 긴급구호 차원을 넘어서는 개발지원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개발지원·원조는 단순한 물품의 제공형식으로 이루어지는 응급구호와는 달리 사회개발을 목표로 이루어지는 지원을 의미한다. 사회개발의 개념은 단순한 경제성장뿐 아니라 식수공급, 가족계획, 문맹퇴치, 소득증대사업지도 등 다양한 개발협력 사업을 포함한다.¹⁶⁾ 선진국들의 개발지원·원조를 보면 재정지원을 비롯하여 프로젝트나 프로그램 지원, 기술지원, 인도적 지원 등 다양한 형태로 구성되며,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대규모 지원, 응급상황에 대한 식량·식수·의료 공급, 빈곤퇴치와 문맹퇴치를 위한 인도주의 지원, 통합적 개발을 목표로 한 보건의료, 교육, 복지, 인구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된다.¹⁷⁾

구사회주의권의 개발지원 경험을 살펴보면, 사회변화(사유화, 경제개혁, 상업발전)를 유도하기 위한 기술을 지원하고 민주주의와 시민사회 형성을 가속화하기 위해 필요한 계층에 지원금을 공여하였다. 그러나 상당부분 정치적 원조의 성격을 띠고 있어서 국영기업의 사유화나 사적분야 개발은 적극 지원했으나, 보건·행정 및 사회개발 분야는 상대적으로 적게 지원했다.¹⁸⁾ 이런 점에서 대북지원이 북한주민들의 인도주의 환경과 인권상황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고려하고, 남북간 인적, 물적, 기

16) 이금순, 『대북 인도적 지원 개선방안: 개발구호를 중심으로』 (서울: 통일연구원, 2000), p. 52.

17) Paula Hoy, *Players and Issues in International Aid* (London: Kumarian Press, 1998), p. 5; 이금순, 『대북 인도적 지원 개선방안: 개발구호를 중심으로』 (서울: 통일연구원, 2000), p. 54에서 재인용.

18) 이금순, 『대북 인도적 지원의 영향력 분석』 (서울: 통일연구원, 2003), p. 22.

술 교류 증대와 북한의 대남의존도 심화, 북한의 개혁·개방 촉진 등의 요소들을 따져볼 필요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통일을 대비한 북한사회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여기에 따라 체계적인 지원·원조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사회개발 프로젝트는 북한주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인도주의를 실현하는 실제적인 인권정책이 될 것이다. 이러한 북한사회개발계획을 추진하면서 인적 접촉 문제나 정치적 인권문제 해결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가야 한다. 남한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지원·원조는 대북협상의 중요한 자원이다. 이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북핵문제 해결을 돕고 북한의 개혁·개방을 촉진하며 북한에서 발생할 환경재난 혹은 민족재난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다. 남한의 지원·원조 자원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면 중국·일본 등 주변4국의 북한흡수를 방지하고 한국주도의 통일전략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V. 사안별 쟁점과 문제점

1. 인적 접촉 사안

북한의 인권문제 가운데 남한과 직접적인 관계에서 제기되는 쟁점들, 소위 인도주의적 사안으로 불리는 이산가족과 납북억류자, 국군포로 등의 문제가 있다. 이러한 인도주의 사안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자유로운 이동, 인간과 인간의 접촉 및 교류에 관한 문제이다. 동서독의 경우도 이산가족들에 대한 상봉과 재결합 등 자유로운 이동은 인적접촉·교류로 분류하여 다른 어떤 문제보다 우선적으로 취급하였다.

이산가족 문제는 현재 추진 중인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를 통해 상봉

을 제도화하고 규모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2008년 5월 현재 15차에 걸쳐 1만 5천여 명의 상봉과 4만여 명의 생사확인 성과를 거두었다. 이산가족 정보통합센터를 통해 파악된 생존자 9만여 명이 대부분 고향자임을 감안할 때, 이들의 대규모 '고향방문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현재까지는 북한 내 지방단위의 열악성 때문에 실행되지 못했으나, 필요한 재정과 설비를 제공하고 사업을 성사시켜야 할 것이다. 1천 명 단위의 고향방문단 형태로 추진하면 1년 기간 안에 9만 명의 고향방문을 성사시킬 수 있다.

납북자 문제에 대해서는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근거로 북한과 적극적인 협상을 벌여야 한다. 한국전쟁 휴전 이후 납북자가 총 3,790명인데, 3,300명은 돌아오고 미송환자가 486명이다. 미송환자 가운데는 KAL 기 납북(1969년 12월), 해군함정 납북(1970년 6월), 고상문씨(1979년 4월), 안승운 목사(1995년 7월), 1970년대 말 실종되었던 김영남·이명우·홍건표·최승민·이민교 등 고교생도 포함되어 있다.¹⁹⁾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송환되었고, 송환되지 못한 486명은 현재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북한에 송환을 요구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국정원 및 통일부를 비롯한 국가기관이 자체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대한 행방을 파악하여 가족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정부는 북한당국에 실태파악을 요청하고 필요하면 공동조사도 실시해야 한다. 그런 후 이 자료를 바탕으로 북한당국에 송환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국군포로 문제에도 실태파악 및 송환협상을 추진해야 한다. 현재 국군포로는 총 1만 9천여 명이며 그 가운데 생존자는 545명으로 추정하고 있다.²⁰⁾ 북한은 국군포로 문제와 관련하여 과거 이승만 대통령이

19) 김수암·이금순·임순희, 『2007 북한인권백서』 (서울: 통일연구원, 2007), pp. 267, 272. 김영남씨는 2006년 6월 29일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통해 어머니와 누나를 만나 납북이나 월북이 아닌 '돌발입북'이라는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다.

20) 국군포로는 한국전쟁 중 실종신고된 행방불명자 41,971명 가운데, 포로교환 시

인민군포로를 일방적으로 석방해버렸기 때문에 포로교환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그 때문에 남한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군 포로 문제도 결국 법적 문제나 정치적 문제로 풀기는 어렵고, 가족상봉이라는 인적 접촉, 인도주의 문제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 탈북자 가족에 대해서도 앞으로 남북관계의 진전 여부에 따라 인적 접촉의 범주에 포함하여 가족상봉을 요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인도주의 문제와 대북지원

인도주의 문제는 북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이다.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이 시민적·정치적 권리보다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의 우선적 실현을 강조하는 입장인데, 북한도 인권을 “인민이 응당 가져야할 정치적·경제적·문화적 및 사회적 제반권리”²¹⁾라고 정의하며 인권을 인도주의 문제로 부각시키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대북지원을 북한의 인도주의 상황 개선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면 실현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대북지원은 인도주의 목적을 포함한 사회개발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인도주의 지원이 북한에서 차별받는 집단에 지원될 경우 재정지원을 통해 이들의 사회적 위상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사회구조를 바꾸어 놓는 역할도 하게 된다.

북한 빈민층의 굶주림은 일시적 현상이 아닌 북한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다. 북한주민들의 월평균 임금은 3,000원인데 실제 한 달 생활에 필요한 돈은 6만~10만 원으로 큰 차이가 난다.²²⁾ 이 때문에 주민들은 부족한

귀환자 8,726명과 전사처리자 13,836명을 제외한 19,409명으로 추정된다. 2007년 1월 현재 생사확인된 1,734명 중 사망 888명, 행방불명 301명, 생존 545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21) 사회과학원, 『정치용어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0), p. 718.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장사를 하든가 여러 가지 편법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신흥부유층이 생겨나고 있는 반면 하층민들은 장사할 능력이 없어서 생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절대빈곤층의 규모가 수백만에 이르며 이들은 굶주림과 질병에 놓여 있다. WFP는 시기에 따라 이러한 빈민층의 규모를 600만~800만으로 추정하고 있다. UNICEF와 WFP가 북한과 공동으로 2004년에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6세 미만 어린이 4,800명 가운데 23%가 저체중, 37%가 만성영양장애, 7%가 급성영양장애이며, 조사대상 어머니들의 약 1/3이 영양실조와 빈혈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²³⁾ 대북 인권단체인 '좋은벗들'은 국제사회의 긴급 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2008년 5~6월 두 달 사이에 20만~30만 명이 굶어죽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²⁴⁾

이런 점에서 굶주림과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북한주민들을 위한 지원은 시급하다. 이는 인도주의 차원에서 진지하게 다루어야 할 문제이다. 계층별, 지역별 지원·원조 전략을 세우고 북한과 협상해야 한다. 계층별로는 사회적으로 가장 열악한 상황에 있는 빈민층,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집단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역별로는 북한이 병원이나 학교 등 사회지원망을 전국에 체계적으로 건설해 놓았기 때문에 사회개발이라는 종합계획을 갖고 접근하면 비조직화된 제3세계의 지원·원조보다 훨씬 높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북한에서 결핵퇴치운동을 벌이고 있는 유진벨재단이 전국 각 지역에 건설

22) 2007년 9월 현재 평안남도 순천시의 경우 중산층 4인가족 1달 평균 생활비는 15~2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하며, 개천시의 경우에는 중산층 1달 생활비가 10만 원 정도 필요하다고 한다. 상류층은 1달 생활비로 40~50만 원을 쓴다고 한다. 북한인 KD씨 인터뷰, 2007년 9월 중국 단둥시; 북한인 S씨 인터뷰, 2007년 10월 26일 중국 단둥시.

23) 김수암 외 공저, 『2007 북한인권백서』 (서울: 통일연구원, 2007), pp. 240, 242.

24) 『연합뉴스』, 2008년 5월 9일.

되어 있는 결핵요양소를 활용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북한이 운영하고 있는 지역자립체제의 성격을 파악하여 이를 적극 활용하면 지원·원조 정책의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된다.

3. 정치적 인권 문제

북한의 인권상황 가운데 가장 문제되는 부분은 바로 정치적 인권에 관한 것이다.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에 의하면, 시민적·정치적 권리는 생명권(제6조), 고문금지(제7조), 이동의 자유(제12조),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제19, 21, 22조), 사상·종교의 자유(제18조) 등 여러 권리를 포함한다. 북한의 경우 시민적·정치적 권리는 크게 생명권, 신체의 자유, 법적 보호, 평등권, 자유권, 종교의 자유, 참정권 등의 영역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²⁵⁾ 공개처형과 인신매매 등 생명권이 심각하게 유린되고 있고, 불법구금 및 체포, 고문, 관리소와 교화소를 통한 신체의 자유가 억압되고 있다. 납치·실종, 불공정한 재판절차 등 법적 절차가 무시되며, 적대계층·이산가족 등 성분정책에 대한 차별과 장애인 격리수용 등 평등권이 침해되고 있다. 거주·여행의 자유와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보통신의 자유 등 자유권이 극도로 억압되고, 종교와 신앙·신념의 자유가 억압되고 있으며, 정치활동 제한과 투표방식 등의 문제도 있다.

이 가운데 정치범수용소, 공개처형, 거주·이동의 자유 통제, 성분차별 정책, 종교의 자유 억압, 참정권과 집회·결사의 자유 제한, 탈북자 강제송환 등이 국제사회에 부각되고 있다. 김일성·김정일의 정치를 비난하거나 당·정 및 사회주의체제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적대분자’ 등 정치사

²⁵⁾ 김수암 외 공저, 『2007 북한인권백서』, pp. 21~190.

상범으로 분류하여 관리소에 수용한다. 또 남한방송을 청취하거나 3국에서 남한공관과 접촉하고, 교회·선교사와 접촉한 사람들도 정치사상범으로 수용된다. 이들에 대해 북한은 북한형법 44-54조에 근거하여 ‘국가전복음모죄’, ‘반동선전선동죄’, ‘조국반역죄’ 등의 처벌규정을 적용한다. 북한은 2004년 9월 영국의 빌 라멜 외무차관에게 이러한 강제노동수용소의 존재를 처음으로 인정했다고 보도된 바 있다.²⁶⁾

정치적 인권문제에 대해 제도보다는 사람위주로 접근해야 한다. 유럽연합과 영국은 북한과 외교협상 및 인권대화를 하는 가운데 1995년 7월 납북된 안승운 목사의 행방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국제사면위원회(AI)도 제도보다는 인권침해를 받은 사람을 구체적으로 거명하여 개선을 요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사람을 통해 체제를 변화시킨다는 전략이다. 이런 점에서 ‘관리소’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소에 의해 어떤 인권유린이 자행되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파악해야 한다.²⁷⁾ 이를 위해 탈북자와 북한 내 활동가들의 증언을 청취하여 관리소의 운영 실태와 구체적인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체계적 자료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선택과 집중’이라는 원리를 활용하여, 가급적 의제를 좁혀서 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접근해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공개처형 중지를 요구하고, 지역간 이동의 자유, 종교자유의 확대, 복수후보제 선거법 준수, 기표방법의 개선 등을 요구해야 한다.²⁸⁾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10만 명의 탈북자

26) 『연합뉴스』, 2004년 9월 17일.

27) 정치범수용소로 간주되는 관리소는 국가보위부가 운영하는 관리소가 있고, 사회안전부가 운영하는 관리소가 있다. 관리소는 전시예비물자를 보관·관리하는 지역이 아닌가 추측되는데, 실제로 18호 관리소의 경우 인민보안성이라는 국가 경찰기관의 후방기지 즉 ‘물자보급기지’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18호 관리소의 흑막”, 『림진강』, 2호 (2008), pp. 14-55.

28) 북한은 선거법에 복수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단일후보 추천의 관행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기표방식이 반대의사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어 단일후보 상태에서 반대의견을 표시하기 어렵도록 되어 있다.

에 대해 강제송환을 금지하고 생존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Ⅵ. 인도주의 · 인권 분야의 정책과제

1. 5년 계획 및 인도주의 · 인권 종합계획 2020 수립

2012년까지 향후 3년은 북한이 가장 어려운 고비를 맞아 한국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올해 신년사에서 2012년을 강성대국 건설의 해로 공식 선언했기 때문에 북한은 큰 부담을 갖게 되었고 경제활성화를 위해 남한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러한 시기에 한국은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실시함으로써 북한주민들에게 한국으로의 통일기대감을 심어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동독의 국민들이 서독으로 편입되기를 희망했던 독일처럼, 북한의 국민들도 한국으로 편입되기를 희망하는 열망이 생겨나야 한다. 중국은 올림픽과 엑스포를 계기로 사회가 급변할 것이며 북한도 중국의 영향을 받아 변화의 시기를 맞게 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시기에 한국이 통일대안으로 부상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경제협력과 지원·원조를 통해 북한과의 다각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북한민심잡기에 나서야 한다.

긴급구호성 지원을 넘어서 개발지원으로의 확대는 생존문제를 장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개발권을 강조하고 있는 국가들에 시급히 필요하다. 북한도 개발지원으로의 전환 필요성을 인식하고 국제사회에 대해 개발지원으로의 전환을 요청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환경과 국제정세의 변화를 감안하여 지도급 간부들과 북한주민들에게 ‘한국이 희망’이라는 의식을 심어줄 수 있는 중장기 인도주의 · 인권 종합계획을 수립 · 추진해야 할 것이다.

2. '남북 인도주의 대화' 추진

한반도 분단체제의 현실을 놓고 볼 때, 불안정한 한반도를 평화적·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일과 북한인권상황을 개선하는 노력은 병행할 수밖에 없다. 한반도 평화정착과 북한 인권개선의 노력은 한국의 발전과 통일을 위해 어느 쪽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과제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들 중 하나를 먼저 선택하도록 요청받고 있다. 한국사회 내에 민족화해와 한반도 평화, 남북교류·협력을 우선적으로 실현해야 한다는 입장과 북한의 인권개선과 민주화를 먼저 실현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투고 있다.

남북문제를 풀어가는 우리들의 기본원칙은 인도주의 정신에 두어야 한다. 화해와 평화를 중시하는 가운데 북한의 인권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인도주의 정신이 필요하다. 이명박 새정부가 인도주의 정신을 기본원칙으로 견지한다면 북한과 당국간 '인도주의 대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인도주의 대화의 기본 의제는 이산가족과 납북자, 국군포로, 탈북자 등 인적 접촉 사안이 되어야 한다. 또한 북한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개선을 위한 식량·비료지원 등 인도적 지원문제를 포함하여 포괄적 의제로 다루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정치적 인권문제는 포함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는 의제들을 포함하도록 한다.

당국차원의 인도주의 대화가 정치적 부담이 된다면 인도주의 사안을 적십자사가 주로 맡아 왔기 때문에 적십자회담을 대화채널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민간단체 차원에서도 지난 15년간 쌓은 대북신뢰를 바탕으로 북한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신장에 대한 논의를 북한과 함께 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대북지원 민간단체는 지난 15년 동안 활동하는 과정에서 북한으로부터 상당한 신뢰를 구축했다. 따라서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와 남한국민들의 우려를 전달하고 개선의 필요성을 전달하는 민간의 대화도 추진해야 한다.

3. 정부-민간 및 정부간 역할분담

북한당국을 직접 상대하여 남북관계를 개선해야 하는 정부로서는 인권정책에서의 역할이 매우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정부는 민간과의 관계를 다면적 네트워크로 활용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민간단체간에 소통의 기회를 늘리고, 대북지원, 통일운동, 탈북자, 납북자, 국군포로, 인권운동 등 단체별로 이념적 성향을 구분하여 단체·기관에 적합한 방식으로 북한인권 개선활동에 참여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특히 북한인권 개선활동에 국내의 진보적 인권NGO의 참여를 도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민간차원에서는 전반적인 인권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좋겠으나, 정부의 정책에 맞추어 특정 의제에 역량을 집중하는 것도 좋은 해결방법이 될 것이다. 정부는 인적접촉 사안에 대해 북한당국과 협상을 지속하며 이와 관련한 세미나·자료조사를 지원하고 인도주의 대북지원을 수단으로 활용한다.

정부 차원에서도 관련 부처간 역할분담이 필요하다. 통일부는 북한과의 직접협상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이산가족과 납북자, 국군포로 등 인적 접촉 사안해결에 노력을 집중하는 것이 좋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보다 넓은 맥락에서 북한 내 다양한 인권유린상황(공개처형, 관리소 통제 실태 등)에 대한 국내외적 대책을 수립하고 포괄적 대북인권개선 활동을 전개한다. 특히 국내 탈북자 정착은 지자체와 NGO가 담당하되, 해외 탈북자 실태조사와 자발적 의사에 의한 제3국 정착을 돕는 일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전담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정보원은 납북자와 국군포로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여 필요한 기관에 자료·정보를 제공하고, 국책연구기관은 북한의 인권탄압 제도와 침해사례를 연구·분석하여 관련 단체들에게 자료를 제공하도록 한다.

4. 국제사회와의 연대

우리 국민들은 UN과 미국 등 국제사회와 주변국의 움직임에 민감하다. 특히 국제기구의 활동에 큰 영향을 받는다. 이런 점에서 국제사회와의 연대는 대단히 중요하다. 정부와 국제사회가 역할을 분담하여, 유엔 차원에서는 탈북자 문제, 공개처형, 정치범수용소, 대규모 기아사태 등의 문제를 공론화하고, 정부는 북한과 실제적인 협상으로 대응한다.²⁹⁾ 이 과정에서 인도주의 지원을 병행함으로써 인권문제가 정치문제로 흐르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

국제사회는 글로벌 시대임에도 여전히 이념적으로 분할되어 있으므로 북한에 우호적인 국가군과 북한과 대립하는 국가군으로 구분하여 차별적 외교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미국, EU, 중국, 러시아, 베트남 등 국제사회는 북한과의 관계수준에 맞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 의제를 제시한다. 미·일 등 북한과 외교협상이 진행 중인 국가들과 협력체제를 강화하여 이들 국가의 대북 경제제재 완화, 대북 식량지원 및 교류·협력 확대가 북한의 인권개선과 연계될 수 있도록 관련국간의 다자적 접근을 강화해야 한다. 북미 관계개선 시 북한 내 외국인들에 대한 여행통제를 완화하고 자유로운 취재 및 정보교환 보장을 요구하고, 북일 관계개선 협상 시 북송일본인처들의 방일 추가 실현을 지원하여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환기시켜야 한다.

유엔인권위는 1990년대부터 「유엔 아·태 인권워크샵」을 개최해 왔는데,

²⁹⁾ 유엔의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북한인권상황에 대한 체계적인 보고서 작성에 주력해야 한다.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에 억류되어 있는 양심수의 가족, 공개처형자 가족들에 대한 정보접근을 통해 신상을 파악, 가족과 연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납북자가족모임 등 피해자 가족 및 관련 단체들의 통보(진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도록 한다.

아시아 지역에서 안보네트워크인 6자회담과 병행하여 인권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활동을 시작하고, 보다 넓은 범위에서 북한인권문제를 ‘다자대화’로 다루어 나가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이러한 협의체를 기반으로 아시아지역의 정치경제적 상황에 맞는 「인권규약」 제정 및 ‘아시아 인권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인권협약체제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³⁰⁾ 민간차원에서도 국내 NGO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국제 NGO와의 관계망을 형성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아·태인권네트워크의 구축을 위해 ‘아시아인권센터’의 활동을 기대해 볼 수 있다.

5. 자료 · 정책 개발

북한의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작업을 추진한다. 한국만이 확보할 수 있는 탈북새터민의 증언과 수기를 자료로 활용함과 아울러 국제학술세미나 개최를 통해 국제사회에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켜 나가야 한다. 통일부는 실무자와 전문가들의 합동으로 이러한 작업을 적극 지원하도록 한다.

대북지원에 대해서도 지원과 개발을 위한 자료수집과 분석을 체계화한다. 대북지원 사업이 농업개발, 보건의료, 복지 등 전문화된 영역으로 발전한 것은 큰 수확이다.³¹⁾ 지원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료화와 평가작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실무자와 전문가가 합동작업을 하여 자료를 만들고 대북지원 사업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며 향후 지원

30) 김병로, “동북아 인권NGO의 실태와 협력 동향”, 조한범 외, 『동북아 NGO 연구총서』 (서울: 통일연구원, 2005), pp. 291~371.

31) 정부는 대북지원 NGO의 활동영역을 일반구호, 농업, 보건의료, 사회복지 등 네 분야로 구분하고 있다.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대북지원민관정책협의회, 『대북지원 10년 백서』 (서울: 북민협·민관정책협, 2005) 참조.

방향과 전략을 강구해야 하며, 사업선정 및 추진과정과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중복지원을 줄여 나가야 한다. 지원활동과 더불어 자료축적 및 정리, 체계화 작업은 시급히 필요하다. 북한의 수혜 NGO인 민화협, 민경련 등에 대한 분석과 평가도 이루어져야 한다.

6. 여론형성 및 지식공유 네트워크 구축

인도주의 지원 및 인권정책과 관련하여 대북지원·통일운동NGO와 인권NGO간 소통을 증대하며 국내여론을 만들어가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다. 대북지원 활동은 사업의 내용도 다양화하였고 북한과의 사업추진논의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그러나 장기전략과 담론형성 등의 전술에서는 상당히 부족하며, 북한인권 분야는 더 취약하다. 따라서 인도주의 지원 및 인권정책을 지지하는 여론형성을 위해 대북지원·통일운동NGO와 인권 NGO가 함께 인도주의·인권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소통의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인권과 관련하여서는 유엔 인권위원회나 난민고등판무관(UHCR), 인권고등판무관(UHCHR), 유럽연합, 미국 등을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펴고 있다. 인도주의 문제는 UN의 OCHA(UN 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 WFP, 미국의 국제개발처(USAID), EU의 인도지원 사무국(ECHO, EU Humanitarian Aid Office) 등의 기구들이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인권과 지원 주체들이 반목하지 않고 활발한 소통할 수 있도록 공동워크숍을 개최함으로써 상호협력의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작업의 객관성과 도덕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학캠퍼스나 종교공간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VII. 맺으며

현재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북한과 어떻게 대화를 시작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다. 현재 북한의 입장을 보아서는 6.15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의 전면적 이행을 남북대화의 중심고리로 걸고 있는 것 같다. 남북간에 합의한 기존의 선언을 승계한다고 하지 않으면 남북당국간의 대화는 당분간 어려운 상황이다. 현 정부가 대화를 위한 대화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당국간 대화를 하지 않으면 남북자, 국군포로, 이산가족 등 인권현안을 실제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결국 인권개선의 실익은 얻지 못하고, 체제비판, 정권붕괴 같은 정치논쟁이나 인권개선 구호에만 매몰될 가능성이 크다.

현 정부가 인도주의 목적의 대북지원에 대해 북한이 먼저 요청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고 있는데, 인도주의 지원에 대해서는 그런 조건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 인권과 인도주의는 인류 보편적 가치와 관련된 싸움이기 때문이다. 조셉 나이 교수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상대하려면 결국 하드 파워가 필요하겠지만, 북한 민주주의와 인권 향상은 소프트 파워로만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한다. 북한에 쌀과 비료를 먼저 제공하는 행위가 바로 소프트파워를 갖는 것이며, 도덕과 의리, 명분을 중시하는 북한을 압도하는 방법이다. 대한민국 선진화는 바로 이러한 소프트파워를 축적함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대북지원과 인권활동은 앞으로 국제정세의 변화와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획기적으로 그 역할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2002년 7월 경제개혁 이후 변화의 길로 접어들었으며, 향후 10년 내로 근본적인 변화에 직면할 확률이 높다. 2.13합의 이후 북핵 불능화가 진전되고 있고, 2008년 5월 현재 북미간의 관계개선과 북핵폐기의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상

황이 절박한 만큼 북한도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남북협력을 제의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진전되면 인도주의 지원과 인권개선 활동의 위상은 대단히 커질 것이다.

통일시대의 청사진을 염두에 두고 지금부터 인도주의·인권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나가야 한다. 통일은 북한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경제생활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주는 인도주의·인권을 개선할 때 의의가 있다. 이런 점에서 인도주의·인권 활동을 통일 프로세스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남북의 평화공존과 통일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관심과 노력을 통해 대북지원과 북한인권 개선 정책이 의미 있는 결실을 맺고 평화와 통일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

■ 접수: 2009년 4월 24일 / 수정: 2009년 5월 7일 / 게재확정: 2009년 5월 25일

【참고문헌】

- 곽대중. 『한국 시민운동의 북한인권문제 무관심에 대한 고찰』. 서울: 자유기업원, 2004.
- 국가인권위원회. 『제2회 아시아시민사회포럼 참가 결과보고서』.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2004.
- . 『아시아·태평양 국가인권기구 포럼 제8차 연례회의 참가보고서』.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2004.
- 김동한. “북한 헌법상의 기본권 조항 변천에 관한 고찰”. 『북한연구』, 제6권 제2호 (1995년 여름호), pp. 24~42.
- 김병로. “92년 이후 인도적 대북지원의 성과와 개선과제”. 『남북정상회담 이후의 인도적 대북지원』 (남북나눔운동 정책세미나, 2007년 12월 5일, 백범기념관).
- . “동북아 인권NGO의 실태와 협력 동향”. 조한범 외. 『동북아 NGO 연구총서』. 서울: 통일연구원, 2005.
- . “남남갈등 해소를 위한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 『통일정책연구』, 12권 2호 (2003), pp. 111~139.
- . 『북한인권문제와 국제협력』. 서울: 통일연구원, 1997.
- . 『김정일 정부의 인권정책 변화전망』.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5.
- 김성운. “독일연방(서독)의 대독일민주공화국(동독) 인권정책 사례”. 『사회문화분야 94년도 전문가 위촉과제 종합』. 서울: 통일원, 1994.
- 김성재 외. 『인권시대를 향하여』. 서울: 나남, 2002.
- 김수암.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서울: 통일연구원, 2007.
- 김수암·이금순·임순희. 『2007 북한인권백서』. 서울: 통일연구원, 2007.
- 김중섭·도모나가 겐조 역음. 『세계화와 인권발전』. 서울: 오름, 2004.
-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대북지원민관정책협의회. 『대북지원 10년 백서』. 서울: 북민협·민관정책협, 2005.
- 동아시아평화인권한국위원회. 『동아시아와 근대의 폭력』 1권 및 2권. 서울: 삼인, 2001.
- 림진강. “제18호 관리소의 흑막”. 『림진강』, 2호 (2008), pp. 14~55.
- 위르겐 마이어·마르크스 엥겔스 공동해설. 정태호 역. 『유럽연합기본권헌장, 아시아인권헌장』. 서울: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광주시민연대, 2001.

- 사회과학원. 『정치용어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0.
- 서보혁. 『북한인권: 이론·실제·정책』. 서울: 한올아카데미, 2007.
- 성공회대 인권평화연구소. 『동아시아 인권의 새로운 탐색』. 서울: 삼인, 2002.
- 심익섭. “서독의 대동독 인권정책”. 『사회문화분야 94년도 전문가 위촉과제 종합』. 서울: 통일원, 1994.
- 아시아감시위원회·미네소타변호사 국제인권위원회. 송철복 외 역. 『북한의 인권』. 서울: 고려원, 1990.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엮음. 『인권이란 무엇인가: 유네스코와 세계인권선언의 발전과 역사』. 서울: 오름, 2000.
- 윤여상.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진정성과 헌신성을 기대하며”. 『평화논평』 (온라인), 2008년 5월 1일; <http://www.peacefoundation.or.kr/board/view.php?&bbs_id=tpf01&page=&doc_num=91>.
- . “유엔인권위 대북결의안 채택과 국내의 NGO 활동: 북한인권 문제 국내외 관심과 다양한 대응방법”. 『자유공론』, 제38권 5호 통권 434호 (2003), pp. 66~73.
- 윤주양. 『국제인권레짐과 비정부기구의 역할』. 서울: 고시계, 1998.
- 이금순. 『대북 인도적 지원 개선방안: 개발구호를 중심으로』. 서울: 통일연구원, 2000.
- . 『대북 인도적 지원의 영향력 분석』. 서울: 통일연구원, 2003.
- 이인호.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문제 제기 동향과 대책”. 『국제문제연구』, 제3권 제3호 통권 11호 (2003년 가을), pp. 205~252.
- 이장희. “Helsinki 『인권규정』이 분단국가에 주는 의미”. 『통일문제연구』, 제1권 제3호 (1989년 가을), pp. 33~70.
- 장명봉. “북한의 기본권보장의 제도적 문제점”. 『통일연구논총』, 제3권 제2호 (1994), pp. 169~203.
- 정근식 외 공저. 『한국형 인권지표의 모색』. 서울: 경인문화사, 2004.
- 정은숙. 『21세기 인권의 국제화와 유엔: 러시아의 체첸 군사작전 사례연구』. 서울: 세종연구소, 2002.
- 제성호. “한국의 대북 인권정책 방향”. 『북한연구』, 제6권 제2호 (1995년 여름호), pp. 62~89.
- .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국제협력방안”. 『통일연구논총』, 제6권 1호 (1997), pp. 153~187.

- 최성철. “국제기구를 통한 남북역류자 송환방안 모색”. 『사회문화분야 94년도 전문가 위촉과제 종합』. 서울: 통일원, 1994.
- 토마스 버겐탈, 양건 · 김재원 옮김. 『국제인권법 개론』. 서울: 교육과학사, 1992.
- 한상진, 『현대사회와 인권』. 서울: 나남, 2003.

- Alston, Philip (ed.). *The United Nations and Human Rights: A Critical Appraisal*. Oxford: Clarendon Press, 1992.
- Baehr, Peter R. *The Role of Human Rights in Foreign Policy*. New York: St. Martin's Press, 1994.
- Bilder, Richard B. “An Overview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Hurst Hannum (ed), *Guide to International Human Rights Practice*.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1992.
- Bloed, A. and P. van Dijk (eds.). *The Human Dimension of the Helsinki Process: The Vienna Follow-up Meeting and its Aftermath*. London: Martinus Nijhoff Publishers, 1991.
- Choi, Sung-Chull (ed). *Human Rights in North Korea*. Seoul: Center for the Advancement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1995.
- . *International Community and Human Rights in North Korea*. Seoul: Center for the Advancement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1996.
- Claude, Richard and Bruns Weston (eds). *Human Rights in the World Community: Issues and Action*.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1992.
- Crocker, Chester A., Fen Osler Hampson, and Pamela Aall. *Managing Global Chaos: Sources of and Responses to International Conflict*. Washington, D.C.: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Press, 1996.
- Donnelly, Jack. *International Human Rights*. Boulder: Westview Press, 1993.
- Fitzpatrick, Joan. *Human Rights in Crisis: the International System for Protecting Rights During States of Emergency*.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1994.
- Forsythe, David P. (ed.).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International View*. New York: St. Martin's Press, 1989.
- Fry, John. *The Helsinki Process*. Washington, DC: National Defense University Press, 1993.

- Humana, Charles. *World Human Rights Guide*. 3rd e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2.
- The Institute for South-North Korea Studies. *Political Prisoner's Camps in North Korea: Replicas of Stalinist Gulags*. Seoul: The Korea Herald Inc., 1993.
- .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North Korea: The Reality of Self-styled Paradise*. Seoul: ISNKS, 1995.
- Nossel, Suzanne. "Smart Power". *Foreign Affairs*, vol. 83, no. 2 (March/April, 2004), pp. 131~142.
- Nye, Joseph S. (ed). "Ignoring Soft Power Carries a High Cost" (Harvard Kennedy School of Government, 16 May 2004).
- . "Think Again: Soft Power" *Foreign Policy*. (1 March 2006), <http://yaleglobal.yale.edu/display.article?id=7059> (검색일: 2008.5.1).
- Oraa, Jaime. *Human Rights in States of Emergency in International Law*. Oxford: Clarendon Press, 1992.
- Robertson, A. H. and J.G. Merrills, *Human Rights in the World*. New York: Manchester University Press, 1996.
- Rubin, Barry M. and Elizaabeth P. Spiro (eds.). *Human Rights and U.S. Foreign Policy*. Boulder, CO: Westview Press, 1979.
- Shaw, William (ed.), *Human Rights in Korea: Historical and Policy Perspectives*. Cambridge: Harvard Council on East Asian Studies, 1991.
- Shepherd, Jr., George W. and Ved P. Nanda. *Human Rights and Third World Development*. Westport, CT: Greenwood Press, 1985.
- United Nations, *The United Nations and Human Rights 1945~1995*. New York: UN Department of Public Information, 1995.
- . *United Nations Action in the Field of Human Rights*. Geneva: Center for Human Rights, 1994.
- . *Human Rights: A Compilation of International Instruments*, vol. 1. New York: United Nations, 1993.
- Vincent, R. J. *Human Right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6.
- , ed. *Foreign Policy and Human Rights: Issues and Response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6.

Walters, Gregory J. *Human Rights in Theory and Practice: A Selected and Annotated Bibliography*. Metuchen, NJ: The Scarecrow Press, Inc., 1994.

Abstract

A Framework of Pragmatic North Korea Policy: Focusing on the Issues of Humanitarian Assistance and Human Rights

Kim, Philo(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s Studies, SNU)

This paper attempts to suggest pragmatic strategies and methods to be able to implement the policies of human rights and humanitarian assistance toward North Korea in the situation that the new Lee Myung-Bak administration is being stalemated in performing its policies due to the North's resistance. The paper first suggests basic principles of pragmatic North Korea policy, in which a humanitarian spirit, utilitarian approach and the use of soft power are emphasized. The paper also proposes pragmatic approaches on the human rights and humanitarian issues, in which separate-and-parallel strategy is encouraged in solving human rights issues whereas such strategy as a comprehensive development scheme with action plans is promoted in working out the humanitarian assistance issues for North Korea. Based upon this strategy, this paper presents rational alternatives which is proper to each situation of the agenda after accurately analyzing the points in dispute and a controversial. And lastly, the paper suggests six policy proposals that is able to guarantee the effective implementing the conception of pragmatic North Korea policy.

Keywords: assistance, engagement, human rights, humanitarianism, north Korea policy, soft power, pragmatism

김병로

미국 럿거스 대학교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로 『북한-중국간 사회·경제적 연결망의 형성과 구조』(공저), 『북한체제의 내구력 평가』(공저), 『북한이해의 길잡이』(공저), 『북한사회의 종교성: 주체사상과 기독교의 종교양식 비교』 등이 있다.